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농어촌유학은 도시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농촌으로 옮겨 가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 살며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는 도시지역 학생에게는 농어촌의 생태환경과 농어촌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학생 수 증가와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유학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시·도 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으로 구분하여 유학생 및 유학 가족 단위로 유학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가 법률상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도 농어촌유학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동 지원사업은 23년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안

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소요를 고려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농어촌유학의 정의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